

제 호

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지정서

○ 기 관 명:

○ 소 재 지:

○ 기관장 성명:

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보건복지부장관

직인

변경사항 등	
연 월 일	내 용